의 령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845호 2023. 5. 3.(수)

선람	기관의 장

고 시

○ 의령군 고시 제2023-63호 2023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 2
○ 의령군 고시 제2023-64호 도로구간 변경 고시 ····· 4
○ 의령군 고시 제2023-65호 도로명주소 고시 ····· 6

공 고

○ 의령군 공고 제2023-577호
2024년 의령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참여기업 선정 공고 및 시설 설치희망자 신청 접수·· 8
○ 의령군 시설관리사업소 공고 제2023-13호
의병박물관 제2전시관 증축사업(소방) 입찰공고 ····· 13

■ 발행 : 의령군 ■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570-2740, 행정2740 / FAX 055-570-2709)

의령군 고시 제2023-63호

2023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기업인에 대해 2023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2023. 4. 28.

의 령 군 수

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1)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 상 자	수출기업인 납세자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그 외 일반납세자
연 장 기 간	2개월	3개월
연장된 납부기한	2023. 8. 31.	2023. 8. 31.

2)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상세)

구분	세부내용	제외대상
수출 기업인	·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매출 과표 5억 원 이상인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 · 관세청·KOTRA 선정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2.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대 상 자	·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의 기한연장을 신청하고 승인 통지를 받은 자
연장된 신고기한	·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신고기한과 동일
연장된 납부기한	·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납부기한과 동일

3. 국세청으로부터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승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없이 자동 승인됨을 알려드립니다.

4.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고시문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의령군청 재무과(☎055-570-23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의령군 고시 제2023 - 64호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3일

의 령 군 수

1. 고 시 일 : 2023. 5. 3.
2. 고시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 1차 종속구간 설정(청정로)에 관한 사항(붙임참조)
4.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청 홈페이지(www.uiryeong.go.kr)를 참고하거나 의령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보담당(☎055-570-24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구간 변경 조서(도면 포함) 1부. 끝.

도로구간 변경조서 및 도면

○ 도로구간 변경 조서

순번	구분	도로명	도로명 부여 사유	변경사유	관 할 행정구역	도로구간			길이 (m)	폭 (m)	기초 간격 (m)	기초번호		유사 도로명 및 동일 도로명	변경 고시일
						시점	종점	중심선				시작	끝		
1	변경 전	청정로 (주도로구간)	깨끗한 지역성	1차 종속 구간 설정	유곡면 송산리	-	-	도면 참조	-	-	-	-	-	-	2023.5.3.
	변경 후	청정로 (주도로구간)				송산리 1386-2 일원	송산리 1683-9 일원		214	3	20	1	22		

○ 도로구간 변경 전·후 도면

변경 전	변경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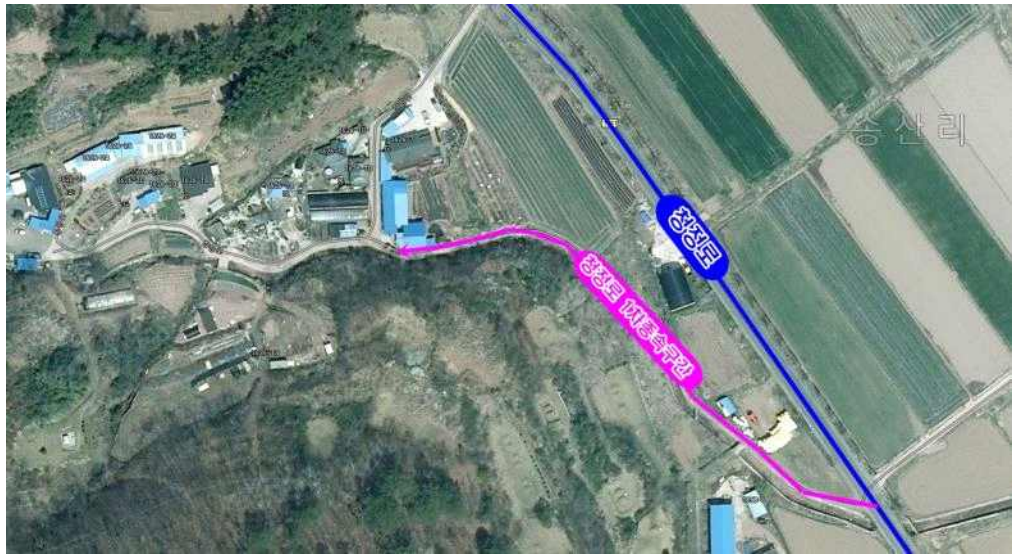

경상남도 의령군 고시 제2023 - 65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3일

의 령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변경: 경상남도 의령군 봉수면 한지2길 20-3 등 10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일
별 지 참 조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별 지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의령군 민원봉사과(☎055-570-2440)에 문의 또는 의령군 홈페이지 및 도로명주소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내역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 로 명 부여사유	비 고
1	경상남도 의령군 화정면 덕교리 648-5	경상남도 의령군 화정면 화정로 78-30	2023-05-03	행정구역명(화정면)을 이용하여 화정로로 명명	부여
2	경상남도 의령군 화정면 덕교리 440-1	경상남도 의령군 화정면 명주로 81	2023-05-03	상정 명지골이라 불리던 자연마을 이름 반영	부여
3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하리 882, 883, 산168-11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수암로 278-152	2023-05-03	물과 바위가 유명한 골이라서 수암이라 붙여진 마을이름 반영	부여
4	경상남도 의령군 유곡면 상곡리 464	경상남도 의령군 유곡면 능인로 383-10	2023-05-03	대한제국 지방구역정리 때 유곡면으로 통합되기 전 능인, 미요, 정곡으로 나누어져 있던 옛 지명에서 유래	부여
5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중리 267-3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중리로1길 5-4	2023-05-03	중리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첫 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부여
6	경상남도 의령군 유곡면 송산리 1374	경상남도 의령군 유곡면 청정로 1648-21	2023-05-03	깨끗한 지역성	부여
7	경상남도 의령군 유곡면 송산리 1375	경상남도 의령군 유곡면 청정로 1648-22	2023-05-03	깨끗한 지역성	부여
8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386-5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용덕3길 36	2023-05-03	의합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4,330m지점에서 분기되는 길로 행정구역명(용덕면)을 이용하여 명명	부여
9	경상남도 의령군 봉수면 한지2길 20-3	경상남도 의령군 봉수면 한지2길 20-1	2023-05-03	대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두 번째로 분기되는 길로 고려시대부터 한지의 생산지로 널리 알려진 지역적 특성을 반영	변경 (건물번호 분할)
10		경상남도 의령군 봉수면 한지2길 20-3			

의령군 공고 제2023-577호

2024년 의령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참여기업 선정 공고 및 시설 설치희망자 신청 접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의령군 공모신청 참여컨소시엄 참여업체를 공고하며,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희망하는 군민의 사업 참여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기한 내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3년 4월 28일

의 령 군 수

1. 컨소시엄 참여기업 선정 결과

분 야	업 체 명	주 소	전화번호	비고
태양광	㈜엔 지 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3길 118	055-525-9660	주관
태양광 / 태 양 열	㈜대성파인텍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남면로 627	055-252-0004	
지 열	㈜혁신이앤씨	경북 경산시 원효로40길 47-2	053-742-4751	
태 양 광 BIPV	㈜에이비엠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8. 2002호	051-759-8632	
모니터링	㈜해인기술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48번길 44, 13층 1313	055-800-8666	
설계 · 감 리	한길 ENG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28. 2동 206호	055-584-2800	

2. 사업 접수 및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3. 4. 28.(금) ~ 5. 31.(수)

나. 신청자격 : 의령군민으로 주택, 상업건물 등 소유자

- 건축물대장 및 등기 필이 아니 된 경우 신청불가, 단) 신축중인 건물은 가능
- 건축 등기상 소유자만 신청가능 (타인명의 신청 불가)
- 태양광・태양열・지열・BIPV 등 2종 이상 에너지원 신청자 가점 부여

다. 접수기관 : 의령군내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라. 신청방법 : 방문접수

마.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 및 자부담금 납입 확약서 1부. (붙임1 참고)

②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1부.(읍·면 사무소 발급)

③ 건축물대장 1부.

④ (한전전력공사 발행) 고객 계약 종합정보 내역(최근 1년간)

바. 사업기간 : 2024. 3. 1. ~ 12. 31. *** 사업공모 선정시 시행**

사. 기타 문의사항은 거주지역 읍·면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3. 보조금 지원단가

○ 태양광 설비

(단위 : 천원, VAT포함)

에너지원	지원 구분		지 원 단 가				
	유 형	용 량	계	단위	국비 (44%)	군비 (36%)	자부담 (20%)
태양광	단독주택	2.0kW초과~3.0kW이하	1,991	kW	876	716	399
	공동주택	~ 30kW/동	1,877		826	675	376
	건 물	~ 100kW/동	2,068		910	744	414

○ 태양열 설비

(단위 : 천원, VAT포함)

에너지원	지원 구분			지 원 단 가				
	형 식	용 량	효 율	계	단위	국비 (55~60%)	군비 (25~30%)	자부담 (15%)
태양열	평판형·진공관형	7㎡초과 ~ 14㎡이하	7.5MJ/m2·day초과~10.0MJ/m2·day이하	1,258	㎡	692	377	189
		14㎡초과 ~ 20㎡이하	7.5MJ/m2·day초과~10.0MJ/m2·day이하	1,088		598	326	164
	자연순환식 온수기	6.0㎡급		6,761	대	4,057	1,690	1,014

○ 지열 설비

(단위 : 천원, VAT포함)

에너지원	지원 구분		지 원 단 가				
	유 형	용 량	계	단위	국비 (50%)	군비 (35%)	자부담 (15%)
지 열	수직 밀폐형	주택·건물(~ 17.5kW이하)	1,413	kW	707	494	212
		건물(1000kW이하)	1,394		697	488	209

(붙임 1)

읍면명 : (　　)읍면　　신청번호:_____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사업신청 및 자부담금 납입 확약서

사 업 명		2024년 의령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신 청 자 (소 유 자)			주관기관	의령군
전 화 번 호			핸드폰	
에 너 지 원			용량 및 단위	(kW, ㎡)
설치장소 (주소)	도 로 명			
	지번주소			
건 물 구 분		주택(　　)	건물(　　)	
자 부 담 금		금	원	

본인은 2024년 의령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며, 융·복합지원사업에 선정 시 자부담금을 납입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소유자) :　　(서명)

※ 2개 에너지원일 경우 2장 작성, 1장에 2개 에너지원 기재 금지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문서확인번호 ※ 이 용지는 위조 식별 표시가 되어 있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성명 (한자)	( )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용도	부동산 관련 용도	[ ]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 ] 제한물권 설정(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 ] 그 밖의 용도(가등기, 가등기말소 등)	
	거래상대방 등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	2024년 의령군 융복합지원사업 계약 관련	
수임인	성명	의령군청	
	주소(자격증 소지자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위의 기재사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 합니다.		발급 신청자 : 홍 길 동 (서명) 홍 길 동	
비고			
발급번호		수수료	600원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 및 출장소장 직인

유의사항

1. 서명은 작성자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등록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표상의 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2.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에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의 여백에 주민등록번호를 ( )로 표기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용도, 수임인란은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며,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4. 부동산 관련 용도란은 부동산 관련 용도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 ]에 √표를 하고, 거래상대방 등란에는 부동산매수인 등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거래상대방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적어 신청합니다.
5. 부동산 관련 이외 용도란은 수요처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예시: 자동차매도용(매수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대출보증용, 선박등기용(매수인의 성명 등), 법인등기용, 공탁금 수령용, 보관금 수령용 등 그 용도를 적습니다]
6. 수임인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법원 등 수요처에 제출하는 경우 수요처의 요청에 따라 위임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명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습니다(예시: ○○○ 법무사).
7. 발급 이후에 용도, 수임인 등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위조·변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비고란에는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표시와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9. 발급사실에 대한 확인은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발급일·문서확인번호·주민등록번호·발급기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0㎜×297㎜[특수용지 80g/㎡]

2024년 의령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안내

□ 사업개요 : 동일한 장소(건물)에 2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태양광, 태양열 등)의 설비를 동시에 설치시 가점부여 (주택, 공공, 상업 등 모든 건물)

□ 대 상 지 : 의령군 읍·면 전지역 * 건물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3년 05월 31일

□ 설치기간 : 2024년 1월 ~ 12월 ☞ 의령군 사업 선정시 적용

□ 사 업 비 : 국비 50%(내외), 의령군 33%(내외), **자부담 평균 17% (15~20%)**

신재생에너지원	설치장소	총 사업비	개인 부담금	비고
태양광 (3kW)	주택	5,973,000	**120만원**	
태양열 (1대)		6,761,000	**102만원**	
태양광 (3kW)	주택 外	6,204,000	**125만원**	
태양열 (1대)		6,905,000	**104만원**	
지열(17.5kw이하)	주택, 건물	24,728,000	**371만원**	

※ 주의사항 : 건축물대장 등기 필수 !! (미등기 지원 불가)

※ 건물은 한전 月평균 사용량에 따라 신청 용량 및 자부담 금액이 결정됨

※ 2024년 개인 부담금은 한국에너지공단 지원단가 발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별 비교표

예시) 주택용 태양광 3kW 설치 시

구분	주택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	비고
자부담 금액	1,735,000원	**1,197,000원**	
보증기간	3년	**5년**	
모니터링 설치 유·무	무	**유**	고장시 즉시 발견

□ 설치 사례

태양광 (전기생산)	태양열 (온수전용)	지열 (온수/난방용)

□ 문의처

- 의령군청 일자리경제과 (055-570-3120)
- ㈜**엔지피 : 010-5229-4011(태양광)** ☞ **주관기업**
- ㈜대성파인텍 : 010-8647-6608, 010-9699-5505(태양광/태양열)
- ㈜혁신E&C : 010-5545-5424(지열)
- 제출서류 : **①자부담금 납입확약서 ②건축물대장 ③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읍·면사무소 제출

의령군 시설관리사업소 공고 제2023- 13 호

시설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제한경쟁(지역, 경남) / 총액입찰 / 적격심사

(단위 원)

건 명		의병박물관 제2전시관 증축사업(소방)		
총 공 사 비		207,823,000	전자입찰서접수 개 시 일 시	2023.04.28.(금) 11:00
도 급 액	기 초 금 액	207,823,000		
	추 정 가 격	188,930,000	전자입찰서접수 마 감 일 시	2023.05.04.(목) 15:00
	부가가치세	18,893,000		
도급자 설치 관급자 재비		-	개 찰 일 시	2023.05.04.(목) 16:00
관급자 설치 관급자 재비		-	개 찰 장 소	경남 의령군 시설관리사업소 입 찰 집 행 관 P C (나 라 장 터)
공사손해보험료		685,000		

2. 공사개요

가. 공사구분 : 소방시설공사(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와 전기)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간

다. 공사위치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482번지 일원

라. 공사내용 :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등 참조

마. 투찰자는 「전자조달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와 일반시설공사업(전기분야)면허를 소지(등록·면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면허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따릅니다. 관련 증빙서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요청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결정을 취소함)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접수)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또한 수정 또는 변경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접수)마감일 전날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고일 기준 시행·적용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대상 주공종 업종 및 비율 : 소방시설공사업 (100%)

※ A값(에 따라 투찰율(낙찰하한율)은 변동될 수 있음(7. 참고)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등 합산액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 추첨(G2B 자동추첨시스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3일)**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착공계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상의 납부확약 각서로 입찰보증금을 면제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다.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 약관을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입찰참가 전에 필히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마. 본 입찰의 참가자격에 관한 진위 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및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처리하고 차 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2,593,726	퇴직공제부금비	1,682,812
국민연금보험료	3,292,46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814,07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32,256	※ A값 :	10,715,328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고용·산재보험료,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정산 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등의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 준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의령군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계약체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붙임1]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령군 홈페이지 https://www.uiryeong.go.kr/index.uiryeong (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및 임금체불 방지 준수

가.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하며, 계약 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다. 본 사업은 「의령군 관급공사 임금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최종낙찰자로 계약체결시에는 『임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 임대 시에는 반드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준공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0.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도급액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초과 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을 따릅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 지킴이」 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마.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개별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붙임 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붙임 4]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5]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현장별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발급면제대상:①도급액이 1억원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이내
②하도급금액이 5천만원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이내
③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시설관리사업소 (☎055-570-2812), 기획예산담당관(☎055-570-2720) 및 우리군 홈페이지(www.uiryeong.go.kr→전자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산업안전보건법」및「건설기술 진흥법」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 및 참고사항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의령군 시설관리사업소 시설운영담당(☎055-570-2812)
- 공사내용 관련: 의령군 시설관리사업소 의병박물관담당(☎055-570-2842)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관련 행정안전부예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법령정보-훈령/예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4. 27.

의령군 시설관리사업소 재무관

[붙임 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의령군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기관이 발주하는 oo 건에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내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군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군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회사명 : ooo

대표자 : ooo

의령군 시설관리사업소 재무관 귀하

[붙임 2]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의령군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의령군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의령군 시설관리사업소 재무관 귀하

[붙임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는(은) 의령군시설관리사업소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는(은)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의령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의령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의령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는(은) 의령군시설관리사업소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기관명(상호) :
대 표 자 : (인)

의령군 시설관리사업소 재무관 귀하

[붙임 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의령군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인)

의령군 시설관리사업소 재무관 귀하

[붙임 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의령군 시설관리사업소 재무관 귀하